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도지사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
상황 ‘보고’ 를 ‘통보’ 로 변경〉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032호)

2024. 8.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출연월일 : 2024. 6. 27.
3. 회부연월일 : 2024. 6.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도지사가 관리·운용하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 하던 것을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안 제5조의4제5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① ~ ④ (생략)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u>보고</u>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u>보고</u> 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 ----- ----- -- <u>통보</u> ----- <u>통보</u>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에서 시·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의미함¹⁾.

1) 학교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²⁾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이는 법제처의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계획’에 따라 일괄개정 추진되는 81개 법률안 및 65개 하위법령³⁾ 중 하나임.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보고’는 행정용어로서 “같은 부내의 상급기관이 지시 요청한 근거에 따라 하급기관이 그 내용이나 결과를 문서나 구두로 알리는 행위”로 상하관계에서 하급자(기관)가 상급자(기관)에게 쓰는 용어인 반면,

‘통보’는 ‘통지보고’를 줄인 행정용어로서 “같은 부서의 동급기관끼리 행정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그 내용이나 결과를 구두 또는 문서로 알려주는 행위”로 평등한 관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임.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 2) **학교용지법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는 시·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① **자치입법권 강화** 측면에서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계약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과 ② **지방자율성 제고** 측면에서 지방 사무에 관한 중앙부처의 사전 승인, 협의 또는 보고를 사후 통보, 의견 제출 등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에 첨부.

종래의 학교용지법에 ‘보고’라고 규율되어 있던 것은, 입법 당시 특정목적의 부담금인 학교용지부담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일률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 주무부처의 지도·감독을 위한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의 통제를 받기보다는, 양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협력적인 관계를 맺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또한 대법원 판례⁴⁾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사무의 성질상으로도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를 처리한 결과를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보고’ 대신 ‘통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또한, 종래에 시·도지사가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현재 시·도지사는 특별회계의 운용

4)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5조 제1항은 시·도지사로서 하여금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6조 제3호는 시·도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은 교육에 관한 사무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설치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가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단순 제출할 뿐, 보고는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 적용의 현실을 반영하는 측면에서도 개정의 취지가 있음.

참고로,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3호, 정부 제출)」이 제출되어 있음⁵⁾.

문 의 처
02)6788-5192

5) 동 개정안에 따르면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가 삭제됨

□ 추진배경

-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 요소
 - 중앙의 입법 기능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 사무에 관한 규범은 지방이 스스로 정립하도록 할 필요

□ 주요내용

- 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하는 법령정비 추진
 - 중앙·지방 협업으로 법률 81개, 하위법령 65개 일괄정비 추진

※ 11.10. 국무회의 후 법률 국회제출 및 하위법령(시행령 41, 시행규칙 24) 11.16., 11.17. 공포·시행 추진

-
- 조례위임 범위 확대(「체육시설의 설치·이용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기존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율에 관한 기준을 법령에서 정함

개선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모두 위임

- 중앙부처 승인·협의, 보고 최소화(「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

기존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 전 중앙부처의 승인 필요

개선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부처에 통보

- 입법 과정 중 행안부 자치분권 사전협의 및 법제처 심사 단계에서 자치입법권 제약 내용을 사전 차단
- 중앙·지방 인적 협력체계(법제자문관)를 통해 법령 정비에 따른 조례 적기 마련 및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지역 현장에서 밀착지원

☐ 기대효과 또는 향후계획

-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결정·집행하기 위한 자치입법권 보장

☐ 조례위임 범위 확대

연번	제명	세부 내용	소관부처
1	건축물관리법	지자체장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지급하는 건축물 해체현장 점검 대행 수수료의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전부 위임함.	국토교통부
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자체장이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및 유아숲지도사 인원 기준을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	산림청
3	온천법 시행령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온천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모두 위임함.	행정안전부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모두 위임함.	행정안전부

☐ 중앙부처 승인·협의·보고 최소화

연번	제명	세부 내용	소관부처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등을 지자체장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함.	여성가족부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계획 및 결과를 지자체장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함.	해양수산부